

창녕군 고시 제2024-70호

창녕군계획시설(홍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계획시설(홍포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포장개체 및 휴게쉼터의 변경설치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04. 15.

창녕군수

1. 창녕군계획시설(홍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변경사유 : 창녕군도시계획시설(홍포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포장개체 및 휴게쉼터의 변경설치로 인한 도면 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형도면을 변경하였음
3. 관계도면 : 따로 붙임(계재생략)

【붙임조서】

창녕군계획시설(홍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군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홍포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1003-5	2,100.0	-	2,100.0	'76.12.7. (건고제194호)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m ²)	건축물			공작 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 적		
총 계	기정	2,100.0	2	43.5	43.5	-	100.0%
공원시설	기정	1,257.1	2	43.5	43.5	-	59.8%
	변경	1,255.0	2	43.5	43.5	-	59.8%
도로 및 광장	소 계	기정	-	-	-	-	26.7%
		변경	-	-	-	-	26.4%
	도 로	기정	121.0	-	-	-	5.8%
		변경	183.9	-	-	-	8.8%
	광 장	기정	439.2	-	-	-	20.9%
		변경	370.8	-	-	-	17.7%
휴양시설	기정	73.9	-	-	-	3.5%	
	변경	77.3	-	-	-	3.7%	
유희시설	기정	514.9	-	-	-	24.5%	
운동시설	기정	58.9	-	-	-	2.8%	
편익시설	기정	49.2	2	43.5	43.5	-	2.3%
녹 지	기정	842.9	-	-	-	-	40.2%
	변경	845.0	-	-	-	-	40.2%

2. 시설결정규모

구 분	공원면적 (m ²)	시 설 른		건 폐 율		비 고
		시설면적(m ²)	비율	건축면적(m ²)	비율	
당 초	2,100	1,257.1	59.86	43.5	2.07	
변 경	2,100	1,255.0	59.76	43.5	2.07	

※ 시설율 : 6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조)

※ 건폐율 : 20%이하 (창녕군계획 조례 제43조제5항)

3. 세부시설조사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m ²)	건축면적(m ²)			비고	
				동수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총 계		2,100.0	2	43.5	43.5		
기정	공원시설 소계		1,257.1	2	43.5	43.5		
변경	공원시설 소계		1,255.0	2	43.5	43.5		
기정	도로 및 광장	소 계	506.2	-	-	-		
변경		소 계	554.7	-	-	-		
기정		산책로	121.0	-	-	-		
변경		산책로	183.9	-	-	-		
기정		1	광장	400.0	-	-	-	
변경		1	광장	331.6	-	-	-	
기정	2	진입광장	39.2	-	-	-		
기정	휴양 시설	소 계	73.9	-	-	-		
변경		소 계	77.3	-	-	-		
기정		3	휴게쉼터1	50.3	-	-	-	
기정		4	휴게쉼터2	23.6	-	-	-	
변경		4	휴게쉼터2	27.0	-	-	-	
기정	유희 시설	소 계	514.9	-	-	-		
기정		5	어린이놀이터	178.9	-	-	-	
기정		6	물놀이장	336.0	-	-	-	
기정	운동 시설	소 계	58.9	-	-	-		
기정		7	주민운동공간	58.9	-	-	-	
기정	편익 시설	소 계	49.2	2	43.5	43.5		
기정		8	음수전	5.0	-	-	-	
기정		9	샤워장	35.7	1	30.0	30.0	
기정		10	화장실	13.5	1	13.5	13.5	
기정	녹지		842.9	-	-	-		
변경	녹지		845.0	-	-	-		

4. 도로조서

구분	규 모				연 장 (m ²)	면 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 계				48.4	121.0				
변경	소 계				69.0	183.9				
기정	산책로	-	1	2.5	42.8	107.0	연결로	광장	광장	
기정	산책로	-	2	2.5	5.6	14.0	연결로	산책로1	휴게쉼터1	
신설	산책로	-	3	3.0	20.6	62.9	연결로	산책로1	휴게쉼터2	

창녕군 공고 제2024-706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2023. 7. 20. 신설됨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관외 왕복이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안 제5조)

4. 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 2) 팩스: 055-530-1750
- 3) 메일: booms00@korea.kr
-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55-530-17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창녕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u>말한다.</u>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 ----- ----- ----- ----- <u>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창녕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장 임채현(☎530-1724)

【관 련 법 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